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통일부 정원 3명(5급 3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7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일부 정원 10명(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8급 1명),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각각 통일부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1명),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정책총괄과장이 분장하던 ‘통일백서의 발간’을 통일기반조성과장이 분장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일백서의 발간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별표 2에 따라”를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68”을 “67”로 하며, 행정사무관 “4”를 “8”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5”로 하며, 행정주사 “26”을 “25”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6”을 “15”로 하며, 행정주사보 “11”을 “9”로 하고, 행정서기 “9”를 “8”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정원표 (제17조제1항 관련)”을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 정원표 (제22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신설한다.

별표 4의2 중 행정사무관 “9”를 “10”으로 하고, 행정주사 “19”를 “18”로
한다.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칙 제2조제2항 중 “2024년 12월 27일”을 “2026년 12월 27일”로, “2024년
12월 28일”을 “2026년 12월 28일”로 한다.

통일부령 제12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
항 중 “1명”을 “3명”으로, “1명)은 2024년 12월 27일”을 “3명)은 2026년
12월 27일”로, “2024년 12월 28일”을 “2026년 12월 28일”로, “1명”을 “3
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9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사
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및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월 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월 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9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및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다만,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2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및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으로 본다.

[별표 2의2]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64
일반직 계	64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3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
행정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0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0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방호서기보	5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3
위생서기보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2
운전서기보	4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2
건축운영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남북연락 담당)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일정책실) ①·② (생략)	제6조(통일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통일백서의 발간	<u><삭 제></u>
7. ~ 11.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통일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통일백서의 발간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u><삭 제></u>
② 별표 2에 따라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①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 ----- <u>.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u>

③ ~ ⑩ (생략)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 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7 의3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 명)은 <u>2024년 12월 27일까지</u> 존 속하며, <u>2024년 12월 28일</u>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4의2의 행정주사 1명 및 별 표 7의3의 행정주사 1명으로 분 다. ③ 삭제 제3조 (생략) 통일부령 제125호 통일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u> ③ ~ ⑩ (현행과 같음)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② ----- ----- ----- ----- --- <u>2026년 12월 27일</u>----- ----- <u>2026년 12월 28일</u> ----- ----- ----- ----- --. 제3조 (현행과 같음) 통일부령 제125호 통일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통일부령 제12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 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 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1의 2의 정원 <u>1명</u>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1명</u>)은 <u>2024년 12월</u> <u>27일까지</u> 존속하며, <u>2024년 12</u> <u>월 28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 사 <u>1명</u> 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 ----- ----- ----- <u>3명</u> ----- ----- <u>3명</u>)은 <u>2026년 12월</u> <u>27일</u> ----- <u>2026년 12월</u> <u>28일</u> ----- ----- -- <u>3명</u>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u>	<u>3</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68</u>	<u>67</u>	-1
행정사무관	<u>4</u>	<u>8</u>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4</u>	<u>5</u>	+1
·	·	·	
·	·	·	
행정주사	<u>26</u>	<u>25</u>	-1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6</u>	<u>15</u>	-1
·	·	·	

•	•	•	
행정주사보	<u>11</u>	<u>9</u>	-2
•	•	•	
•	•	•	
행정서기	<u>9</u>	<u>8</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원 정원표	<u>(제17조제1항 관련)</u>	<u>(제22조제1항 본문 관련)</u>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9</u>		<u>10</u>	+1	
	•		•		•		
	•		•		•		
행정주사			<u>19</u>		<u>18</u>	-1	
	•		•		•		
	•		•		•		